

# 전 주 지 방 법 원

## 결 정

사 건 2020카단 채권가압류

채 권 자 ( )

김제시 ( )

)

송달장소 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

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(송달영수인:전종필)

채 무 자 ( )

전주시 ( )

제 3 채 무 자 1. ( )

전주시 ( )

)

2. ( )

전주시 ( )

)

## 주 문

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청구채권의 내용 2020.07. .자

청구금액 금 19,000,000 원

## 이 유

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 (보험주식 회사 증권번호 제 호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0. 10. ..

판 사



- ※ 1.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.
- 2.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 전 주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20가소1 보증채무금

원 고

김제시

)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301호(만성동, H타워)

(송달영수인 법무사 전종필)

피 고

전주시

변 론 종 결 2021. 4.

판 결 선 고 2021. 5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9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11. .부터 가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